

아리아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347호 2015. 2. 4. (수)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5-70호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공람·공고 2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공고 제2015-70호

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람·공고한 사항중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월 일

정 선 군 수

가. 공람목적 : 정선 고한(태왕아파트)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(폐지)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

나. 위 치 :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-8번지 일원

다. 사업의 면적 : 12,237㎡

라. 정선(고한)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폐지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정선 고한 (태왕아파트)	고한읍 고한리 36-8번지 일원	12,237	감)12,237	-	정선군고시 제2008-17호 (2008.3.27)	

마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(변경)(안) : 폐지

바. 공람기간 :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이상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건축과, 고한읍사무소

아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: 공람 기간내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서면 제출

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(☎033-560-213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